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광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70 발의연월일: 2020. 11. 10.

발 의 자:이광재・신정훈・송기헌

안호영 · 임호선 · 서삼석

윤재갑 • 김성주 • 강준현

위성곤 · 송언석 · 송재호

홍성국 • 박성민 • 박재호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·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학융합지구를 지정·고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정주여건과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대학 캠퍼스에 기업을 포함하는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경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산학협력이가능해져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취업·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있는데, 현행법상 산학융합지구가 대학과 연구소의 집적을 위한 지역으로만 되어 있고, 산학융합지구의 입지지역이 산업단지로 한정되어있어 효과적인 산학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산학융합지구를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고,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에 대학이 소

유한 부지의 일정지역 및 기업도시, 혁신도시,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 집적지를 추가하도록 하며,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(안 제2조제8호의2, 제22조의4 및 제22조의6).

법률 제 호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의2 중 "연구소를"을 "기업, 연구소를"로 한다.

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공단"을 "공단, 대학(「산 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_ 제25조에 따른 산학협 력단을 포함한다)"으로, "산업단지와 「산업기술단지의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 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"를 "산업집적 및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협력 활성화를"로. "시설의"를 "시설. 생산시설 및 그 지원 시설의"로 하고. 같은 항 제2호 중 "대학·연구소의"를 "대학·기업·연구소의"로 하며, 같 은 항 제3호 중 "교육 및 연구·개발에"를 "교육, 연구·개발 및 생산에"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산업단지, 산업기술단지"를 "대학이 소유한 부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지 역 중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), 산업단지, 기업도시, 혁신도시, 경제자유구역 등을 포함한 산업집적지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대학·연구소의"를 "대학·기업·연구소의"로 한다. 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2조의6(산학융합지구에 대한 특례 등) ①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제8조제1호·제2호의 입지기준, 「건축법」 제19조제1항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·개발 시설에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 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은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 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되어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8의2. "산학융합지구"란 기업수	8의2
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·개발	
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<u>연</u>	<u>7]</u>
<u>구소를</u> 집적하기 위하여 제22	<u>업, 연구소를</u>
조의4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지	
역을 말한다.	
9. ~ 23. (생 략)	9. ~ 23. (현행과 같음)
제22조의4(산학융합지구의 지정	제22조의4(산학융합지구의 지정
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, <u>공</u>	등) ①
<u>단</u> 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	단, 대학(「산업교육진흥 및 산
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	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
는 비영리법인은 <u>산업단지와</u>	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
「산업기술단지의 지원에 관한	<u>한다)</u> <u>산업집적</u>
특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	및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협
산업기술단지의 경쟁력을 높이	<u>력 활성화를</u>
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	
<u>하기</u>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·	
개발 <u>시설의</u> 집적이 필요하면	<u>시설, 생산시설 및 그 지원</u>
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	<u>시설의</u>
산학융합 활성화계획(이하 "산	

학융합 활성화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 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대학·연구소의 집적방안
- 3. <u>교육 및 연구·개발에</u> 필요한 시설의 확충방안
- 4. 5. (생략)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 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.
- 1. (생략)
- 2.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단지, 산업기 <u>술단지</u>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

1. (현행과 같음)	
,	
2. <u>대학·기업·연구소의</u>	
3. <u>교육, 연구·개발 및 생산에</u> -	
4.•5. (현행과 같음)	
②	
<u>.</u>	
1. (현행과 같음)	
2	
대학이 소유한 부지	
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	
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지	

에 적합한 지역일 것

3. 「고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 3. -----른 설립기준을 갖출 수 있는 등 대학·연구소의 집적방안 이 실현 가능할 것 4. • 5. (생략) ③ ~ ⑤ (생 략) <신 설>

역 중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 다), 산업단지, 기업도시, 혁신 도시, 경제자유구역 등을 포 함한 산업집적지-----

---대학·기업·연구소의-----

4. • 5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2조의6(산학융합지구에 대한 특례 등) ① 산학융합지구 내 에 입주한 기업은 제8조제1호· 제2호의 입지기준, 「건축법」 제19조제1항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학 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·개발 <u>시설에 제28조에 따</u> 른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

기업이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 무시설은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치하는 것으 로 본다.